

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윤 석 열 

2022년 12월 27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이 상 민
행 정 안 전 부 관
장 (법 제 처 소 관)

● 법률 제19148호
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2절의 제목 중 “기간”을 “기간 및 나이”로 한다.

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상 나이는 「민법」에 따라 ‘만 나이’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관례이나,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‘세는 나이’를 사용하고 있고, 「병역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‘연 나이’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.

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·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·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,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·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,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‘만 나이’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‘만 나이’를 사용하도록 하고,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·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함.

<법제처 제공>